

# 대경문화기술센터 규정

제정 2016. 7. 28. 개정 2017. 5. 23.

**제1조(명칭)** 본 센터는 대경대학교 대경문화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센터는 문화예술분야의 콘텐츠와 기초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연구하여 학교발전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위치)** 센터는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사업)** 센터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정책과 제도 연구
2. 문화예술 관련학과 공연콘텐츠개발 연구
3. 문화예술 콘텐츠 산·학·관 연계 협력 및 교류 활동 지원
4.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공연콘텐츠 개발 및 연구
5. 대학 자체 보유 공연 콘텐츠 연구
6. 문화예술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
7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**제5조(구성)** ①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5.23.>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센터에는 교원, 직원,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겸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7.5.23.>

**제5조의2(운영위원회)**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경문화기술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운영의 기본계획 및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

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별도 보관한다.

[본조신설 2017.5.23.]

**제6조 삭제** <2017.5.23.>

**제7조(예산 및 회계)** 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7.5.23.>

**제8조(준용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